

부속서 II

페루의 유보목록

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페루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항공
- 나. 수산, 또는
-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¹⁾

기준의 조치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해상 사안은 호수와 강에서의 운송을 포함한다.

2. 분야 토착 공동체, 소작농민, 원주민 및 소수집단에 관한 사항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10.5 조)
이행요건(제 9.7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집단과 민족 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민족 집단”이란 토착민, 원주민 및 소작농민 공동체를 말한다.

기준의 조치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이행요건(제9.7조)
------	---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소규모·전통방식의 어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 분야 문화 산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문화 산업”이란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 가. 도서, 잡지, 정기 간행물, 또는 인쇄된 신문 또는 전자 신문의 발행, 배포 또는 판매, 다만, 전술된 것들의 인쇄 및 조판은 제외
- 나. 영화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 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형식의 음악 녹음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 라. 극장 예술²⁾의 제작 및 상연
- 마. 시각 예술의 제작 및 전시
- 바. 인쇄된 악보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판독 가능한 악보의 제작, 배포, 또는 판매
- 사. 수공예품의 디자인, 제작, 배포 및 판매, 또는
- 아. 모든 라디오, 텔레비전 및 케이블 텔레비전 관련 활동, 위성 프로그래밍 서비스, 그리고 방송망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

폐루는 시청각 협력 협정을 포함하여 문화 산업에 관한 기준의 또는 미래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의 인에게 특혜 대우를 제공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9.3조(내국민대우), 제9.4조(최혜국대우),

2) “극장 예술”이란 용어는 연극, 무용 또는 음악과 같은 실황 공연 또는 상연을 말한다.

그리고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에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기존의 조치

5. 분야 수공예 산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페루의 수공예품으로 인정되는 수공예품의 디자인, 유통, 소매, 또는 전시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행요건은 모든 경우에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과 합치한다.

기준의 조치

6. 분야 시청각 산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연간 기준으로 페루 내에 있는 영화상영관 또는 전시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특정 비율(20페센트까지)이 페루 영화로 구성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비율을 설정할 때 페루는 국내 영화 제작, 페루 내에 현존하는 전시 기반시설 및 관객수 등을 포함하는 요소를 고려한다.

기존의 조치

7. 분야

보석 디자인

극장 예술

시각 예술

음악

출판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보석 디자인, 극장 예술, 시각 예술, 음악 및 출판의 발전 및 제작을 위한 정부 지원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해 수령인이 국내 창작 콘텐츠의 특정 수준 또는 비율을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8. 분야

시청각 산업

출판

음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시청각, 출판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페루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그 당사국의 인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기존의 조치

9. 분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 10.5 조) 이행요건(제 9.7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	---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련되거나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기존의 조치

10. 분야 음용수의 공공 공급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음용수의 공공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11. 분야 공공하수처리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유보내용

페루는 공공하수처리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2.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유보내용

페루는 공중통신서비스의 설치, 운영 및 이용을 위한 양여의 부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3.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10.3 조)
 현지주재(제 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기술적이고 생산적인 훈련(educación técnico-productiva)”을 포함하는 기초 및 고등교육에 있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및 보조인력을 포함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교육 체계의 모든 수준이나 단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후원자를 포함하여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4.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도로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유보내용

페루는 페루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만 페루의 영역 내에서 인 또는 물품의 육상운송(“카보타지”)을 제공하도록 승인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페루에 등록된 차량을 사용한다.

기존의 조치

15. 분야 운송

하위분야 국제 도로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국경 지역의 화물 또는 여객 국제육상운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추가적으로, 페루는 페루로부터의 국제육상운송 공급에 대해 다음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서비스 공급자는 페루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 나. 서비스 공급자는 페루 내에 실질적이고 유효한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 다. 법인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페루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주식자본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페루 국민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고 페루 국민에 의해 효과적으로 지배되어야 한다.

기준의 조치

16.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는 제 10.4 조(시장접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제한과 조건의 적용을 받는 다음의 분야 및 하위분야는 제외된다.

법률서비스

가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다음과 같이 공중인 직위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제외

- 1) 수도에 대해 200
- 2) 각 주 수도에 대해 40, 그리고
- 3) 각 도 수도에 대해 20(현법도인 까야오를 포함한다)

나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회계, 감사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가·나·다 및 라에 대해, 페루는 GATS 제 16 조에 따른 페루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건축서비스와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비거주 외국 건축가가

임시등록을 하기 위해 페루에 거주하는 페루 건축가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은 제외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수의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조산사·간호사·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소유되거나 임차된 자산 관련 또는 수수료나 계약 기준의

부동산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승무원/운영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선박, 항공기, 그 밖의 모든 운수장비 및 그 밖의 기계와 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은 페루 국적의 자연인 또는 주소재지와 실질적이고 유효한 본사가 페루 내에 있고 페루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자연인이나 법인은 국내수송 또는 연안운송³⁾ 그리고/또는 국제수송에서 수상 운송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며, 수상운송총국으로부터 관련 운용허가를 획득하고, 적어도 한 척 이상의 페루 국적 상선을 소유하거나 또는 의무적 매입옵션이 부가된 금융리스나 나용선 계약을 통해 그러한 선박을 임차한 인으로 이해된다.

연안운송은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의무적 매입옵션이 부가된 금융리스 또는 나용선계약에 의해 임차된 페루국적 상선에 전적으로 유보된다. 다만, 다음은 제외된다.

- 1) 국가수역 내 탄화수소 운송의 25 퍼센트까지는 페루 해군의 선박을 위해 유보된다, 그리고
- 2)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이 앞서 언급된 방식에 따라 선박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만이 외국국적의 선박을, 페루의 항구 간 또는 연안운송의 수상운송에만, 6 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한해서 운용할 수 있다.

3)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수상운송은 호수와 강에서의 운송을 포함한다.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광고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페루에서 제작된 상업 광고는 최소한 80 퍼센트의 페루 예술가를 고용해야 한다. 페루 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지불되는 임금 및 급여 지불총액의 60 퍼센트 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수령한다.
상기에서 설정된 것과 동일한 비율이 상업 광고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작업에도 적용된다.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예술가 및 공연자에 관한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경영컨설팅서비스,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농업, 수렵업 및 임업 관련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광업 관련 서비스, 직업 소개 및 파견 서비스, 조사 및 경비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제조업 부수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과학 및 기술 관련 컨설팅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 장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빌딩 청소서비스, 사진서비스, 포장서비스 및 국제회의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인쇄 및 출판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국내 또는 국제 장거리 통신서비스

가·나·다 및 라에 대해, 페루는 GATS 제 16 조에 따른 페루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전송 통신서비스, 사설 통신서비스 및 부가서비스⁴⁾

가·나·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양여·승인·등록 또는 공급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페루가 판단하는 그 밖의 자격을 취득할 의무는 제외. 페루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양여 자격이 있다.

자국 영토 밖에 위치한 기본통신망으로부터, 전화를 걸라고 요청하는 회신전화를 받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발신되는 전화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화서비스의 제공으로 이해되는 콜백은 금지된다.

국제트래픽은 교통통신부(Ministerio de Transporte y Comunicaciones)에 의해 부여된 양여 또는 그 밖의 운영 허가를 보유한 기업의 설비를 통해야 한다.
민간 서비스 간 상호접속은 금지된다.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위탁중개인서비스(탄화수소는 제외한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4) 부가서비스는 페루 법에 따라 정의된다.

소매서비스(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도매서비스(탄화수소는 제외한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프랜차이징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가정 및 개인 소유물의 보수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호텔 및 레스토랑(케이터링을 포함한다), 여행알선대행서비스

그리고 관광객안내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엔터테인먼트서비스(극장, 라이브 밴드 및 서비스 서비스를 포함한다), 뉴스제공서비스,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스포츠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 1) 모든 국내 극장⁵⁾ 및 시각 예술 제작 그리고 모든 국내 예술 실황 공연은 최소한 80 페센트의 폐루 예술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폐루 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지불되는 급여 및 임금 지불총액의 60 페센트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수령한다. 앞 문장들에서 설정된 것과 동일한 비율이 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술 인력의 작업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비율은 폐루 밖에서 그와 같이 고용된 외국 출연진에 의해 제공되고, 그들의 공연이 전체 작품 또는 엔터테인먼트를 구성하며, 적절하게 문화 공연 자격이 부여되는 국내 예술 실황 공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외국 서비스는 원래의 출연진으로 최대 90 일 동안 폐루에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연장되는 경우, 외국 서비스단은 최소한 예술가 중 30 페센트, 기술자 중 15 페센트의 폐루 국민을 포함해야 한다. 동일한 비율이 임금과 급여의 지불총액에 적용된다.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예술가 및 공연자에 관한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경기 및 레크레이션 스포츠 시설 개발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5) “극장 예술”이란 용어는 연극, 무용 또는 음악 같은 실황 공연 또는 상연을 말한다.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레크레이션파크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해상운송 및 내수운송 서비스

가·나·다 및 라에 대해, 페루는 GATS 제 16 조에 따른 페루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도로 운송: 운영자가 있는 상업 차량의 대여, 도로 운송 장비의 유지 및 보수 그리고 도로 · 다리 · 터널 서비스의 개발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모든 운송 부수서비스: 화물취급서비스, 창고업, 화물운송대리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가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항공운송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서비스, 그리고 컴퓨터예약시스템(CRS) 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자연과학 연구 및 개발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운영 허가가 요구될 수 있으며, 참여하여 연구와 그 범위를 알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당국이 폐루의 해당 활동을 대표하는 한 명 이상을 연구과정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제외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개발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권한 있는 당국의 개별 허가를 조건으로 함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가·나 및 다에 대해, 제한 없음. 다만, 운영 허가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은 제외

라에 대해, 양허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에 명시된 것은 제외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유보상의 어떠한 조항도 GATS 제 16 조에 따른 폐루의 약속과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비합치 조치의 목적상,

1. “가”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을 지칭한다.
2. “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지칭한다.
3. “다”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지칭한다, 그리고
4. “라”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지칭한다.

기준의 조치